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인력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병역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병무청 병역자원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고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하며, 병무청 자원관리과

명칭을 국외자원관리과로 변경하고, 병무청 현역입영과와 현역모집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역기획과와 현역입영과로 각각 변경하며, 병무민원상담소의 기구 및 인력을 효율화하여 병무민원상담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인천병무지청에 복무관리과를 신설하며,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와 현역입영과를 병역판정입영과로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과 사회복지복무국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병역자원입영국과 동원사회복무국으로 국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와 현역모집과 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현역입영과와 병역진로설계과로 개편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와 고객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통합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6명(8급 10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6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지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데이터관리”를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사이버조사과·정보기획과·데이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예방·감시를”을 “예방·단속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을 “병역면탈”로, “조사의 총괄”을 “사실조사 및 수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10.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조사
 11.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2.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감독
-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

영

2. 사이버 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감독
제8조제2항 중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관리과 및 자원관리과”를
“현역기획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역입영과장”을 “현역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15.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7.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역모집과장”을 “현역입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를 “선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현역병지원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지원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11.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12.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13.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관리과장”을 “국외자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전망”을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을 “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화상담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를 “제1호, 제3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7.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지방병무청”을 “서울지방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두고,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전북지방병무청 및”을 “두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입영동원관리국 및 사회복무관리국”을 “운영지원과·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와·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동원사회복무국에 동원계획과·동원훈련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1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경남지방병무청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본문 중 “병역판정검사와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지방병무청 정보관리과장:”을 “병역판정입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 및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 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제16조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을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영동원관리국장”을 “병역자원입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제23조제5항 중 “제11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을 “병역진로설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맞춤특기병”을 “취업맞춤특기병·육군 전문특기병·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물관리국)”을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물관리국장”을 “동원사회복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22조제1호·제2호”를 “제22조”로 한다.

②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③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제31조의2의 제목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와·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를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와·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로,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를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0조 및 제21조”를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를 “각”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3명(7급 3명)”을 “7명(6급 2명, 7급 5명)”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단서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4명”을 “8명”으로, “11명”을 “5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2월 25일”을 “2026년 2월 24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단서 중 “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3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같은 란 단서 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중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하고, 같은 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단서 중 “제3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31조의2제1호, 제 제2호 및 제4호”로, 같은 란 단서 중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

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강원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전북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강원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5”를 “294”로 하고, 일반직 계 “281”을 “29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행정사무관 “22”를 “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0”을 “22”로 하고, 행정주사 “42”를 “43”으로 하며, 행정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2”를 “21”로 하고, 행정주사보 “42”를 “48”로 하며, 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0”을 “29”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5”를 “294”로 하고, 일반직 계 “281”을 “29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행정사무관 “23”을 “24”로 하며,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를 “24”로 하고, 행정주사 “43”을 “44”로 하며, 행정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2”를 “21”로 하고, 행정주사보 “41”을 “47”로 하며, 행정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8”을 “2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을 각각 “35”로 하고, 의료기술주사 “2”

를 “3”으로 하며, 의료기술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60”을 각각 “5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7”을 “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1”로 하고, 행정서기 “31”을 “2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60”을 각각 “5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8”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1”로 하고, 행정서기 “32”를 “2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6”을 각각 “1,479”로 하고,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을 “24”로 하며, 행정주사 “209”를 “20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70”을 “26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305”를 “303”으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8”을 각각 “1,48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56”을 “55”로 하며,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을 “24”로 하고, 행정주사 “223”을 “221”로 하며, 행정주사보 “272”를 “274”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을 “11”로 하며, 행정서기 “306”을 “312”로 한다.

별표 6의2 중 의료기술서기 “19”를 “20”으로 하고,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을 “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89”를 “271”로 하고, 의료기

술서기보 “16”을 “15”로 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8 중 1.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하고,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5일) “2024년 2월 25일”을 “2026년 2월 25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0일”로, “2024년 7월 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북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중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병역자원국) ① (생 략)	제7조(병역자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병역자원국에 <u>병역판정검사</u> <u>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u> <u>데이터관리과</u>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 · 서기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② ----- <u>병역판정검사</u> <u>과 · 병역조사과 · 사이버조사과</u> <u>· 정보기획과 · 데이터관리</u> ---
③ 삭 제	-----
④ (생 략)	-----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병역면탈 범죄의 <u>예방 · 감시</u> 를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⑤ -----
2. <u>병역판정검사</u>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u>조사의 총괄</u>	-----.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u>의료기관의 실태</u> <u>조사</u>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 베이스 관리	1. ----- <u>예방 · 단속</u> 을 -----
	2. <u>병역면탈</u> ----- ----- <u>사실조사 및 수</u> <u>사</u>
	3. -----
	----- <u>의료기관</u> -----

4. 병역면탈 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관리

5. 삭 제

6. (생 략)

7. 「병역법」 위반 범죄의 예
방 활동에 관한 사항

8.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
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9.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
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10.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
조사

11.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
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
분 확인

12.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
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
리·감독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⑥ ~ ⑧ (생략)

제8조(입영동원국) ① (생략)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입영과 · 현역모집과 · 동원관리과 및 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사이버 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 · 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 · 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 · 감독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8조(입영동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역기획과 · 현역입영과 · 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

-----.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생략)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 10. (생략)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12. ~ 14. 삭제
- <신설>

<신설>

<신설>

15. (생략)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③ 현역기획과장-----
-----.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11. 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15.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7.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18.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현역입영과장-----
-----.

1. (현행과 같음)

2. <u>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u> 3. <u>현역병지원자 선발</u> 4. · 5. (생략) 6. <u>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u> <u>운영에 관한 사항</u> 7. <u>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u> <u>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u> <u>의 관리</u> 8. <u>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u> <u>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u> <u>적관리</u> 9. <u>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u> <u>사에 관한 사항</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생략) ⑥ <u>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u>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u> 2. ~ 6. (생략) 7. <u>삭제</u>	2. ----- <u>선발</u>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9. <u>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u> <u>지원자-----</u> 10. <u>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u> 11. <u>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u> <u>선발 및 입영</u> 12. <u>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u> <u>재분류</u> 13. <u>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u>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외자원관리과장-----</u> <u>-----.</u> 1. ----- <u>수급에 관</u> <u>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	---

8. <u>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u> 9. <u>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10. ~ 12. (생략) <u><신설></u> <u><신설></u>	<u><삭제></u> <u><삭제></u> 10. ~ 12. (현행과 같음) 13. <u>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u> 14. <u>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u>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u>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서무·문서·보안·인사 및</u>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 <u>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삭제></u> <u><삭제></u>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 사항 수집

<신설>

④ 병무민원상담소장-----
-----.

1.·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5. 제1호, 제3 및 제4호-----
--

6.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신 설>

<신 설>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를 더 두고, 강원지방병무청·충북 지방병무청·전북 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입영동원관리국 및 사회복무관리국을 둔다.

③ 서울지방병무청 입영관리국에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

관인관리

7.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
--서울지방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 지방병무청-----

-----, -----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
--- 두고, -----

-----.

② ----- 운영지원과·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

③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훈련과 및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두고, 사회복지복지국에 사회복지복지과 · 복지관리과 · 산업지원과 · 고객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신 설>

④ 각 과장 및 팀장은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관 · 서기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제주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동원사회복지국에 동원계획과 · 동원훈련과 · 사회복지과 · 복지관리과 · 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④ 강원지방병무청 · 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 · 병역판정입영과 · 동원관리과 · 사회복지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⑤ -- 과장-----

-----.

1. -----

-----.

2. 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서관 · 서기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2. 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
서기관 · 서기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
만, 서울지방병무청, 대구 · 경
북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
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
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고객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
관 · 서기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서
울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
청은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생 략)

5. 서울지방병무청 정보관리과

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
만,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
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3. 고객지원과장: -----
--. 다만-----

-----.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병역판정입영과장: -----

<u>장:</u>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5의2.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u> 6. · 7. (생략)	제16조(운영지원과)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 7. (현행과 같음)
제23조(<u>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u>) ① <u>입영동원관리국장</u>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③ (생략)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u><신 설></u>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u>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제3호에</u>	제23조(<u>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u>) ① <u>병역자원입영국장</u>-----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u> ⑤ ----- ----- <u>제15호까지</u>----- -----. <u><삭 제></u>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 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⑧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삭 제>

<삭 제>

분장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⑨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의 선발·모집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무관리국) ① 사회복무관리국장

⑥ 병역진로설계과장-----
-----.

1. (현행과 같음)

2. ----- 취업맞춤특기병·육군 전문특기병·임기제 부사관-----
--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① 동원사회복무국장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
②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
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
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
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
·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
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
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제5호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보관리과장은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의2(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경북지방

③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 방위협회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⑦ -----
----- 제22조-----
-----.

<삭 제>

제31조의2(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

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의2(경남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

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제32조의2(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삭제>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운영지원과·병역판정검사과·현역입영

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⑦ (생략)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3명(7급 3명), 행정심판·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7명(6급 2명, 7급 5명)-----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연수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지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22명, 8급 9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7급 3명, 8급 11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1명

⑤ (현행과 같음)

⑥

8명

5명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 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 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할 수 있다.	----- ----- ----- -----.
⑦ (생 략)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 사 중 참복결핵 검진을 실시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u>2024년 2월 29일</u>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2월 25</u> <u>일</u>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 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③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한시정원) ① ----- ----- ----- ----- ----- <u>2026년 2월 28일</u>----- ----- -----. ② ----- ----- ----- ----- <u>2026년 2월 25</u> <u>일</u>----- ----- -----. ③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3년 12월 30일</u>-----.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7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3년 12월 30일</u>----- <u>2023년 12월 31일</u> ----- ----- -----.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제3조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6년 6월 30일</u>-----. ②·제3조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방
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
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을 제외
한 별표 3의4의 정원 3명(행정
서기보 3명)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보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
원 2명(8급 2명)에 해당하는 초
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삭 제>

<삭 제>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

<u>본다.</u>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285	294	+9
일반직 계	.		281	290	+9
서기관	.	또는	6	7	+1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22	23	+1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20	22	+2
행정주사	.		42	43	+1
행정주사 · 의료기술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22	21	-1

•	•	•	
•	•	•	
행정주사보	<u>42</u>	<u>48</u>	+6
행정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0</u>	<u>29</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85</u>		<u>294</u>	+9	
일반직	·	계	·		·		
	·		·		·		
			<u>281</u>		<u>290</u>	+9	
서기관	·		·		·		
과학기술서기관	·	또는	·		·		
			<u>6</u>		<u>7</u>	+1	
행정사무관	·		·		·		
			<u>23</u>		<u>24</u>	+1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2</u>		<u>24</u>	+2	
행정주사	·		·		·		
	·		·		·		
			<u>43</u>		<u>44</u>	+1	
행정주사 · 의료기술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2</u>		<u>21</u>	-1	

•	•	•	
•	•	•	
행정주사보	<u>41</u>	<u>47</u>	+6
행정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8</u>	<u>27</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3	35	+2
일반직 계	33	35	+2
·	·	·	
·	·	·	
의료기술주사	2	3	+1
·	·	·	
의료기술주사보	4	5	+1
·	·	·	
·	·	·	

[별표 5]

병무민원상답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0</u>	<u>51</u>	-9
일반직 계	<u>60</u>	<u>51</u>	-9
서기관 또는	<u>1</u>	<삭 제>	-1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u>1</u>	<삭 제>	-1
·	·	·	
행정주사	<u>7</u>	<u>6</u>	-1
행정주사보	<u>13</u>	<u>11</u>	-2
행정서기	<u>31</u>	<u>27</u>	-4
·	·	·	

[별표 5의2]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0</u>	<u>51</u>	-9
일반직 계	<u>60</u>	<u>51</u>	-9
서기관 또는	<u>1</u>	<삭 제>	-1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u>1</u>	<삭 제>	-1
·	·	·	
행정주사	<u>8</u>	<u>7</u>	-1
행정주사보	<u>13</u>	<u>11</u>	-2
행정서기	<u>32</u>	<u>28</u>	-4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96</u>	<u>1,479</u>	-17
일반직 계	<u>1,496</u>	<u>1,479</u>	-17
·	·	·	
·	·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6</u>	<u>24</u>	-2
행정주사	<u>209</u>	<u>206</u>	-3
·	·	·	
·	·	·	
행정주사보	<u>270</u>	<u>263</u>	-7
·	·	·	
·	·	·	
행정서기보	<u>305</u>	<u>303</u>	-2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1</u>	-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8	1,480	-18
일반직 계	1,498	1,480	-18
행정사무관	56	55	-1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	24	-2
행정주사	223	221	-2
행정주사보	272	274	+2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	11	+1
행정서기	306	312	+6

·	·	·	
의료기술서기	<u>19</u>	<u>20</u>	+1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1</u>	<u>10</u>	-1
·	·	·	
·	·	·	
행정서기보	<u>289</u>	<u>271</u>	-18
·	·	·	
·	·	·	
의료기술서기보	<u>16</u>	<u>15</u>	-1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2</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1</u>	-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1.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 ·	· <u>1. 제48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 ·	· <u>1. 제48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6년 2</u> <u>월 28일)</u> · ·	
·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5일) · ·	<u>2. 제48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5</u> <u>일)</u> · ·	<u>2. 제48조</u> <u>제2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6년 2</u> <u>월 25일)</u> · ·	